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9년차 총회
주요결의사항 (요약)

제119년차 총회
주요결의사항(요약)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

2025년 5월 27일(화)~29일(목)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기 간 : 2025. 5. 27.(화) ~ 29.(목)
- 장 소 : 서울신학대학교
- 주 제 :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

○ 총회임원

- 총 회 장 안 성 우 목사 (서울서, 로고스교회)
- 부총회장 이 기 용 목사 (서울중앙, 신길교회)
- 부총회장 안 보 옥 장로 (강 원, 귀래교회)
- 서 기 김 요 한 목사 (충 남, 은산제일교회)
- 부 서 기 홍 지 명 목사 (서울북, 호원교회)
- 회 계 조 성 환 장로 (세종공주, 공주교회)
- 부 회 계 김 승 모 장로 (대전중앙, 대전선화교회)

○ 각부 조직 보고

1. 선교부

- 가. 부 장 : 김학섭 목사
- 나. 서 기 : 이용구 장로
- 다. 소위원 : 박해정 신현모 손제운 목사, 노수현 주태문 장로
- 라. 부 원

한기채 공수길 안성우 유승대 손제운 이성준 조준철 유장길 이승원 정인교
김진오 김영환 임응순 신성대 박해정 문장욱 김명희 신용수 박경순 주 진
박병주 오길원 김학섭 윤학희 심창용 한선호 최도훈 이권직 홍충식 민경휘
류경남 임재규 신현모 권형준 이양순 박성균 손성용 김진호 이성복 김신일
조경철 김정철 배명덕 김재학 조한용 최수진 김인중 안선홍 허정기 양명현
김공식 이규영b김창민 전용운 이창호 노수현 강성식 채수철 이도영 고상남
유봉조 이용구 유병길 송의천 정수희 손병두 인병철 이길산 황찬우 조오영
임형주 주태문 김상진 김경호a 민태경 송정유 (76명)

2. 교육부

- 가. 부 장 : 장현익 목사
- 나. 서 기 : 조현표 장로
- 다. 소위원 : 김주섭 전병권 최성주 목사, 노연옥 김진성 장로
- 라. 부 원

이시호 최삼을 이철희 이덕성 임채영 박노훈 박윤규 류성은 조종환 구교환
최봉수 서동일 장현익 강상구 양종원 구자훈 전병권 한성대 오세현 주석현
김철규 피상열 최현민 박명룡 김주섭 백운모 정 찬 김영기 임명빈 고성래
김찬기 이재정 김성기 문희성 양정환 최성주 권세광 안경수 이명관 유원선
조현표 구정균 최완기 김여한 조영태 김태종 유일식 장세준 김종원 고선기
최 환 전영식 임효선 구당희 김기선 박동원 이병철 김진성 피상학 백상호
이순영 변강권 이용훈 광의중 현종두 노연옥 박기호 김수일 김인호 정동원
양호연 (71명)

3. 평신도부

가. 부 장 : 윤수현 목사

나. 서 기 : 김석환 장로

다. 소위원 : 오성문 박병권 박상호 목사, 송윤섭 조봉재 장로

라. 부 원

이용수 이봉석 백운주 윤훈기 이창훈 김양태 정대호 최일만 김용우 강재근 박상호 김순재 김용남 박종석 박병권 김덕기 김호영 정덕균 강영구 최 진 윤수현 이진행 손상욱 이현재 송창민 김철호 나충식 오성문 권재봉 진형민 이요한 최두영 께까오후 이창수 김석환a성효경 박옥식 이재동 유기봉 김남일 노성배 박용모 설문석 송윤섭 김기태 박문규 전갑진 전수환 한동형 임성선 조양행 이상택 하태형 이태진 손희원 이홍구 조복연 이인규 이용수 문근영 신현철 허이영 이상복 윤 승 정공균 김학산 최윤락 조장연 이종귀 조봉재 오영식 박철수 최은호 (73명)

4. 법제부

가. 부 장 : 황영복 목사

나. 서 기 : 유 춘 장로

다. 소위원 : 차주혁 오부영 백장현 목사, 홍재오 나재설 장로

라. 부 원

유영승 이기용 김명채 신건일 이만진 김수환 황영복 장성연 진인호 이덕한 함용철 윤성원 지형은 조기호 조영진 이봉조 차주혁 김경삼 송창학 박원영 김원천 정대영 정경원 박현식 강철구 안홍락 송창원 피종호 신기순 박도훈 김성진 조영래 우경식 백장현 홍승표 김중오 김낙문 박재규 설광동 이진상 류승동 문민석 김복철 오부영 정 택 강덕희 여승철 박성숙 장요섭 정성진b 윤석형 김병호 명철호 홍승재 유 춘 이국희 조등호 조경범 홍재오 안충순 나재설 김학규 광정근 장희철 유병남 김정호 문득모 과소신 김영문 전원배 윤영만 김재홍 문장규 (73명)

5. 심리부

가. 부 장 : 조병재 목사

나. 서 기 : 김우철 장로

다. 소위원 : 정재학 유병욱 조경석 목사, 전병목 이건설 장로

라. 부 원

박이경 한성호 이기철a홍영수 송성용 이대일 안성기 이규승 이성일 김우곤 성장용 정성진a최종환 조병재 정찬선 장신익 정재학 오선화 고영근 신춘식 김유진 유병욱 염운호 이행규 정상철 송천용 천석범 홍진술 김영민 최낙훈 남봉우 이광성 김동일 김주현 윤세광 강은택 진종철 허병국 조경석 박상중 최영걸 김중호 박춘환 전병목 손창현 이규영a신진섭 고영만 김형중 김용원 진승호 임성열 유문환 전용병 이의기 이한주 신명수 김원수 조경화 광웅기 이건설 김상국 심오석 한만근 이돈영 김주일 김병호 박인균 김우철 정성덕 강봉모 김병태 (72명)

6. 서무부

가. 부 장 : 오주영 목사

나. 서 기 : 장기동 목사

다. 소위원 : 성찬용 고광진 목사, 최광식 이철구 박전곤 장로

라. 부 원

서경배 최성상 유영배 정호섭 이우열 성찬용 문인서 홍지명 김덕래 손경호 임건혁 정승일 오주영 이정우 강남철 이강섭 이정환 이호균 한상민 임재수 공보균 장기동 이동명 고광진 손병록 황요섭 이승갑 이봉용 김 훈 이병성 지용승 박연기 오영환 김이겸 오연택 황용득 우재성 박성진 이대연 허 완 이재식 김재봉 김지상 강기성 박전곤 하봉호 백영현 장릉기 이기룡 이호삼 나근실 신진균 최태동 임재영 김봉경 강홍구 조남재 조성현 김명익 김승모 조성환 이광진 김수열 이철구 김복은 남정일 박성도 최광식 최춘우 문형식 김경호b (71명)

7. 청소년부

가. 부 장 : 이기철 목사

나. 서 기 : 손재형 장로

다. 소위원 : 이두상 류래신 김세웅 목사, 장유편 김성동 장로

라. 부 원

도강록 이두상 한 웅 한정우 김명한 안세광 윤창용 이기철b류래신 김태호 신윤진 독일균 김영훈 양형철 김선일 고치곤 이동수 이춘오 남봉룡 차승환 홍용휘 신동원 김세웅 동현국 임석웅 박상철 정삼열 김광호 백승진 황유선 박정규 장유편 어문경 손재형 김동길 유상원 손택식 이용은 이병업 유상훈 이규배 김준홍 신덕철 김석진 권재운 장인순 임문환 이대중 김석환b김성동 정성숙 조봉연 박기원 강신규 이돈배 홍사훈 박석규 한병용 최병석 정종만 안상기 문철구 배석환 송무준 (64명)

8. 농어촌부

가. 부 장 : 김승범 목사

나. 서 기 : 임승우 장로

다. 소위원 : 구본홍 함동주 최창환 목사, 안석만 김귀성 장로

라. 부 원

김용주 한상길 권영기 김동구 김정심 박용석 구본홍 정동규 박승로 정현진 김승범 김연홍 이한경 함동주 이내정 채종석 김재준 윤영교 박영빈 백준호 김홍일 류우승 최창환 박종현 정기춘 김순겸 임순택 임승우 오재원 이후승 임백수 유장준 신승호 이상호 최명휴 손택환 김만기 이성우 김상열 나상윤 윤찬희 임재경 김시노 안보옥 성승규 안석만 이은진 성병석 하정수 김희원 안계운 배일호 이태영 문영민 이기태 김귀성 이녹권 최은홍 최광덕 이홍수 설문권 이영식 (62명)

9. 사회복지부

가. 부 장 : 박명목 목사

나. 서 기 : 홍신중 장로

다. 소위원 : 왕수일 장승민 최병희 목사, 김재유 배동환 장로

라. 부 원

장승민 이창만 박명목 이영택 김연태 이시구 최덕성 송두호 장주섭 이병곤 고석현 박태일 오영근 김형철 최병희 장규남 왕수일 설재순 고화석 김창환 김재봉 황하균 신현량 박영태 현재철 유도현 이용남 이권호 손준홍 장동필 오중환 홍신중 유영복 최승주 이창희 배동환 김남철 김상배 신태호 김재열 서철원 박운식 박래권 김윤동 윤주섭 김재유 소진창 한기덕 이용주 장봉근 김성환 이춘수 김두환 황운익 박두기 이태근 성원기 양권식 김의승 송태영 양재철 정용홍 (62명)

10. 교회음악부

가. 부 장 : 백병돈 목사

나. 서 기 : 조종용 장로

다. 소위원 : 정민조 강환식 김도석 목사, 김장성 한우근 장로

라. 부 원

조용삼 남기는 전득풍 백병돈 박성호 이후용 안희성 김영건 이영록 김도석 이대성 김선영 강환식 이상우 이천순 김요한 송현석 황정현 오홍덕 박 훈 정민조 이경원 김위만 유영근 안승민 한우근 김정옥 유연철 김성주 김기영 박분순 송태섭 김수곤 김재훈 추고덕 한문호 김성근 박홍병 박광섭 조종용 김성도 차성복 함홍남 허 용 손신한 임병한 송영환 신현석 차태병 표성구 김영권 김장성 우재경 이양우 정도균 정영열 (56명)

11. 군선교부

가. 부 장 : 서현철 목사

나. 서 기 : 박준희 장로

다. 소위원 : 권선형 김민웅 손현창 목사, 신부호 이봉남 장로

라. 부 원

서현철 광장준 박종배 임종기 황정일 최성열 박정수 권선형 이도행 홍은해 남성현 손현창 김민웅 한익현 김형배 류정호 김성은 최광섭 박신재 주기철 주용민 서종표 장성한 허천희 백운선 박순봉 박준희 채종구 이현구 우종일 신부호 김종진 임재평 차동필 문행원 조남일 이봉남 유동용 이기훈 함영주 고진성 황영수 이종철 김용일 안동재 조병할 김현수 안승수 김중환 석기천 김수봉 박상호 임무만 박종배 허요한 (55명)

12. 공천부

가. 부 장 : 안성우 목사

나. 서 기 : 김요한 목사

다. 소위원 : 이기용 홍지명 김연태 최현민 우정식 양정환 목사 안보옥 조성환 김승모 박순봉 박문규 성승규 김수일 장로

○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결의(별지1)

법제부장 차주혁씨가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상회의에 상정하니, 타당하다고 한 3건의 가부를 물으니 재석 62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다.

법제부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경남서지방회와 전북중앙지방회가 청원한 헌법 개정안 제43조(목사)에 대해, 이를 통상회의에서 다룰지에 대해 찬반을 물으니 재석 6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633명으로 부결되다.

○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건의안 및 청원서 접수 보고(별지2)

서무부장 오영환씨가 접수한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건의안 및 청원서(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특별법 및 제반규정 개정안, 기타 청원서류) 133건을 아래와 같이 각부로 회부함을 보고하다.

- 1. 선교부 -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 4건
- 2. 심리부 - 타교단 교회 교단가입/타교파 목사 청빙 청원 18건
- 3. 서무부 - 건의 및 청원 14건
- 4. 법제부 I - 헌법 및 시행세칙 수개정 청원 81건
- 5. 법제부 II - 특별법 및 제규정 수개정 청원 16건

○ 의회부서 결의안 보고

1. 평신도부

서기 김석환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가. 사업

- 1) 평신도주일 행사를 9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다.
- 2) 제41회 평신도지도자수련회를 2026년 3월초에 진행하기로 하다.
- 3) 평신도부 소위원과 평신도 기관장 간담회를 갖기로 하다.

나. 예산

- 1) 평신도지도자수련회 예산 3,0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2) 평신도주일 예산 2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3) 전국장로회 예산 1,0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4) 전국권사회 예산 1,0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5) 평신도단체협의회 예산 4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총예산 : 56,000,000원

2. 청소년부

서기 손재형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가. 권역별 연합수련회

- 목적: 청소년·청년 신앙부흥과 지방회연합사역 지원
- 일시: 미정
- 권역: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5개 권역

나. 권역별 청소년·청년 지도자 네트워크

- 목적: 청소년·청년 지도자 지방회연합사역 지원
- 일시: 미정
- 권역: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5개 권역

다. 청소년·청년 e스포츠대회

- 목적: 성결교회 청소년·청년 전도 계기 마련
- 일시: 미정
- 장소: 미정

라. 청소년·청년 지도자세미나

- 목적: 성결교회 청소년·청년 지도자 양성
- 일시: 2026년 3월 중
- 장소: 미정

마. 청소년·청년 정책세미나

- 목적: 120년차 정책논의 및 청소년부 소위원의 공동활동
- 일시: 2026년 3월 중
- 장소: 미정

바. 청소년·청년 아웃리치

- 목적: 청소년·청년 선교영성 활성화
 - 일시: 미정
 - 장소: 미정
- 총예산: 35,000,000원

3. 공천부

서기 김요한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가. 항존위원 및 운영위원, 각 이사 및 위원 선임과 보선 공천은 공천부장인

총회장에게 위임하고 총회장단과 협의하여 공천부에 보고하기로 하다.

4. 교육부

서기 조현표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가. 사업

- 1) 성결교회 신앙과 신학/ 성경에 근거한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목회 사역 강화 : 신앙중심, 성경중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권역별 교사세미나 개최 등
- 2) 다음세대 교육선교를 위한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재개발과 사역 강화 : 제10회 교사대회 개최
- 3) 교단 신앙의 건강한 전승을 위한 교재 및 자료의 적극적인 보급진행
- 4) 장년교재(구역·소그룹·목장)와 가정예배서의 연계 및 심화 발간
- 5) 다음세대 교육선교를 위한 특별 사역 강화 : 교육목회 플랫폼 구축 등

나. 예산

- 1) 교육교재 개발비 40,000,000원
 - 2) 교사교육 및 훈련비 20,000,000원
 - 3) 교육목회 지도자 양성비 10,000,000원
 - 4) 신학 및 교육교재 개발비 10,000,000원
 - 5) 온라인교육 영상자료 개발비 45,000,000원
 - 6) 성경중심, 부모교육, 청소년 교육교재개발비 40,000,000원
 - 7) 멀티부교재 개발비 10,000,000원
- 총예산 175,000,000원

5. 교회음악부

서기 조중용씨가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심의처리하다.

가. 사업

- 1) 성탄캐럴 찬양 공모전
-목적: 수준 높은 성탄캐럴곡들을 발굴 선정하여 교단의 모든 개교회들에 공모전 수상곡 배포
-일시: 2025년 7월~10월
- 2) 서울신대 교회음악관련 교수들과의 연석회의
-목적: 서울신대 음악관련학과와의 연계사업 논의
-일시: 2025년 7월 중
-장소: 미정
- 3) 교회력에 따른 주일예배 찬양곡 추천표 배포
-목적: 찬양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찬양곡 추천표 보급
-일시: 2025년 10월 중
- 4) 지역찬양축제 및 STU 알림콘서트
-목적: 찬양을 통한 지역의 연합과 해당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교단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들에게 서울신대학교를 알리고자 함
-일시: 2025년 11월 중
-장소: 미정
- 5) 제119년차 교회음악부 정책세미나
-목적: 교단 교회음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
-일시: 2026년 3월 중
-장소: 미정

나. 예산

- 1) 성탄캐럴 찬양 공모전, 교회력에 따른 찬양곡 추천표 배포 - 20,000,000원
 - 2)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 관련학과 협력사업 - 3,000,000원
 - 3) 지역찬양축제 및 STU 알림콘서트 - 5,000,000원
 - 4) 119년차 교회음악 정책세미나 - 3,000,000원
- 총예산 : 31,000,000원

6. 선교부

서기 이용구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가.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디사이플목회아카데미, 서울제일지방회에서 청원한 사단법인 슬로스쿨, 서울강남지방회에서 청원한 성결미디어연구소, 전남 지방회에서 청원한 안양소망의집 4개 기관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의 건은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사 후 승인하기로 하다.

나. 사업계획

- 1) 교회성장세미나 - 10,000,000원
 - 2) 개척교회교역자부부수련회 - 20,000,000원
 - 3) 성결교회주일, 전도주간주일, 통일주일 포스터 발행비 - 9,000,000원
 - 4) 성결교회부흥키워드 사업비 - 50,000,000원
 - 5) 북한선교정책사업비 - 8,000,000원
 - 6) 특수기관전도비 - 9,000,000원
 - 7) 경목활동지원비 - 5,000,000원
 - 8) 교목단수련회지원비 - 3,000,000원
 - 9) 사회선교단지원비 - 10,000,000원
 - 10) 교목단기독학생수련회 - 3,000,000원
- 총예산 : 127,000,000원

7. 군선교부

서기 박준희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 가. 군목수련회 : 10,000,000원
- 나. 군목활동지원비 : 5,000,000원
- 다. 군종장교후보생 지원비 : 3,000,000원
- 라. 진중합동세례식 보조금 : 30,000,000원
- 마. 군종장교후보생 장학금 : 5,000,000원
- 바. ROTC 후보생 세례식 : 2,000,000원
- 사. 민간성직자 지원비 : 5,000,000원
- 총예산 : 60,000,000원

8. 농어촌부

서기 임승우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 가. 농어촌교역자 자녀장학금 : 130,000,000원
- 나. 농어촌교역자 및 지도자수련회 : 20,000,000원
- 다. 농어촌선교정책개발 : 10,000,000원
- 라. 낙도교회 지원 : 10,000,000원
- 총예산 : 170,000,000원

9. 사회복지부

서기 홍신종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 처리하다.

가. 사업

- 1) 사회복지 통계 기초조사
- 2)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정책세미나
- 3) 2026년 장애인 주일

나. 예산

- 1) 은퇴목사(성광회) 위로회 지원금 1,5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2) 은퇴여교역자(성은회) 위로회 지원금 8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3) 은퇴장로(성로회) 위로회 지원금 1,7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4) 원로장로 위로회 지원금 6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5) 홀시모회(안나회) 위로회 지원금 1,1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6) 안나회 유자녀 장학금 1,4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7) 장애인 목회자 위로금 8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8) 장애인 주일 포스터 제작비 15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9) 사회복지정책세미나 행사비 3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총예산 : 83,500,000원

10. 심리부

서기 김우철씨가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심의처리하다.

- 가. 경인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예장개혁 어울림 교회)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나. 청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김광민)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나. 전남동지방회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독립교회연합 길 갈교회)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라. 서울제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염병호)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마. 서울제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C&MA 곤지암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바. 서울제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독립교회연합 언덕위의가나안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사. 서울제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C&MA 예수생명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아. 서울제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C&MA 주님의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자. 서울제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나성 세인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차. 서울강서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장원석)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카. 서울강서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윤복심)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타. 서울강서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고임종)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파. 서울강서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김수관)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하. 유럽직할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로마한인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거. 전주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 큰영광교회)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너. 인천남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맹진재)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더. 경기중앙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김진상)의 건은 무효하므로 고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허락하다.
- 러. 경서지방회가 청원한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서대문교회) 건은 기각하다.

11. 법제부

서기 유춘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 하니, 심의처리하다.

- 가.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81건은 헌법 제91조 1항, 2항에 따라 법제부 전체 회의 후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허락하다.
- 나. 특별법 및 제규정 수·개정안 29건 중 16건은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하고 타당하다는 13건은 통상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허락하다.

12. 서무부

부장 오주영씨가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심의처리하다.

- 가. 경인지방회가 청원한 유지재단에서 전국 지교회에 매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일괄 발송 건은 기각하다.
- 나. 경인지방회가 청원한 농촌목회연수원 설립 건은 기각하다.
- 다. 부산서지방회가 청원한 총회사무국의 문서 제규정 강화 건은 기각하다.
- 라. 부산서지방회가 청원한 기성교회주소록 앱을 장로도 회원 가입과 로그인 가능하도록 조치 건은 기각하다.
- 마.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교단 주소록 PDF 발행 건은 기각하다.
- 바. 서울강서지방회에서 청원한 10월 첫주일을 군선교주일로 제정 건은 허락하다.
- 사. 충서중앙지방회에서 청원한 군선교주일 제정 건은 허락하다.
- 아.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시동교회 고 김기봉 집사 순교자 확정 건은 허락하다.
- 자.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성결회관 와플대학 임대 승인 건은 허락하다.
- 차.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성결원 총회 지원 중단 건은 통상회의에 회부하여 찬반 의견을 들은 후 허락하다.
- 카.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총회본부활용대책 TF팀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한 총회본부 매각과 이전에 대한 업무 위임대리권 부여 건은 통상회의에 회부하여 찬반 의견을 들은 후 허락하다.
- 타. 북한선교위원회에서 청원한 통일주일 날짜 변경 청원 건은 허락하다.
- 파.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회원교단 참여 건은 허락하다.

-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결의(별지3)

법제부 서기 유춘씨가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심의처리하다.

1. 경기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징계법 23조(5장 제목에서 제삼 삭제)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2. 인천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처무규정 15조 3항 바호 삭제의 건은 기각하다.
3. 인천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처무규정 17조 1항(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4. 서울남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처무규정 17조 1항(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5. 전북중앙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17조 1항(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6. 인천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처무규정 18조 홍보실 신설의 건은 기각하다
- 7. 전남서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재무규정 13조(총회비 산출시 15~19세 세례교인과 70세 이상 세례교인은 제외)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8. 인천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2조(평신도를 성도로)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9.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청원한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3장 제9조 8항 신설의 건은 기각하다
-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청원한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3장9조8항, 3장 12조(재판비용 공탁)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11. 인천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평신도국에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의 건은 기각하다.
- 12. 전북중앙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본부 업무위임규정-평신도국에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의 건은 기각하다.
- 13. 선거관리위원장이 청원한 선거관리운영규정 5조 4항, 5조 5항 마호, 7조 3항, 7조 7항 가호, 7조 7항 다호(전자투표 추가, 불법선거운동시 처리)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14. 선거관리위원장이 청원한 선거관리운영규정 3조 2항, 4조 1항 가호, 5조 1항, 5조 2항, 5조 3항, 5조 3항 사호, 5조 5항 나호 수정의 건은 허락하다.
- 15. 활천사 운영위원장이 청원한 활천사 정관 15조(정년, 주간 63세로, 기타 직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로) 수정의 건은 허락하다.
- 16. 총회임원회가 청원한 해선위원규정(당연직 임원) 수정의 건은 허락하다.
- 17. 교역자공제회가 청원한 공제회운영규정 28조, 31조, 37조 수정의 건은 허락하다.
- 18. 총회교육위원장이 청원한 총회교육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4항은 허락하고, 제4조 1항 나호 수정의 건은 기각하다.

○ 예산안 통과

기획예결산위원장 유영배씨가 예산안을 보고하니 기획예결산위원회에 위임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자는 설광동씨의 동의에 수입안은 허락하고 지출안만 위임하자는 이봉조씨의 개기에 대한 찬반을 묻는 중 설광동씨의 동의 철회가 있어 수입안과 지출안 모두 기획예결산위원회에 위임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자는 한우근씨의 재개기가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다.

○ 기타토의

유신진화론 이단성에 대한 연구위원회 신설을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1년간 연구하자는 한선호씨의 긴급동의가 재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성립되어 찬반 각 3명의 토론 후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해 부결되다.

○ 회의록 낭독

회의록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자는 홍승표씨의 동의가 성립되어 가결되다.

○ 폐회

미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자는 홍승표씨의 동의가 성립되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직전총회장 류승동씨가 기도하니 오후 4시 58분이었다.

<별지1>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제118년차 총회)

현행	행	개정안	상정 지방회 및 사유	결과	찬반 결과
헌법 제46조(사무총회)	1. 회원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1. 회원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조직(직제)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지리목사가 의장이 된다. 3. 조직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때와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임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 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의결은 정기 사무총회에 준하며, 재산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	<충서중앙지방회> 1 당회 직원회는 의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무총회 의장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시 담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의장이 되어 사무총회를 개회해도 사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실정하기에 담임목사라는 명시가 필요하다. 2 헌법 제8장 재산관련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9항 나호와 상충된다.	타당하다	가결
헌법 제46조(사무총회)	1. 회원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2. 소집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때와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임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 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의결은 정기 사무총회에 준하며, 재산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	제46조(사무총회)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재비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다. 1. 회원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조직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지리목사가 의장이 된다. 3. 소집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 때와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임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 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의결은 정기 사무총회에 준하며, 재산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	<전남동지방회> 1 당회 직원회는 의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무총회 의장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시 담임목사 아닌 사람이 의장이 되어 사무총회를 개회해도 사회법에서는 인정하고있는 실정하기에 반드시 담임목사라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2 헌법 제8장 재산관련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9항 나호의 규정으로 일치시키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당하다	가결
헌법 제46조(사무총회)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정기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재비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다. 1. 회원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2. 소집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 때와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임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 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의결은 정기 사무총회에 준하며, 재산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	제46조(사무총회)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재비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다. 1. 회원 ·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조직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지리목사가 의장이 된다. 3. 소집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때와 당회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정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임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소한다.	<인천동지방회> 1 당회 직원회는 의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무총회 의장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시 담임목사 아닌 사람이 의장이 되어 사무총회를 개회해도 사회법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실정 이기에 반드시 담임목사라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2 헌법 제8장 재산관련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9항 나 호와 상충된다.	타당하다	가결

현	행	개	정	안	상정 개	지방회 정	및 사	유	결과	찬반 결과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임시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별지2>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건의안 및 청원서(제119년차)

NO	의회부서	청 원 기 관	건의안청원 및 수개정 내용	구분	
1	선교부 (4건)	강원서지방법회	디사이플 목회아카데미(대표 오성락 목사)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	
2		서울제일지방법회	대한학교 사단법인 슬로스쿨(대표 유명식 장로)		
3		서울강남지방법회	성결미디어연구소(대표 임민순 목사)		
4		전남지방법회	장애인가주시설 안양소망의집(대표 조용형 목사)		
1	심리부 (18건)	경인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예장개척 어울림교회)	교회	
2		청주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예장합동 김광민 목사)		교역자
3		전남동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독립교회연합 길갈교회)		
4		서울제일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예장합동 영병호 목사)	교역자	
5		서울제일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C&M 공자암교회)		교회
6		서울제일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독립교회연합 언덕위의가나안교회)		
7		서울제일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C&M 예수생명교회)	교회	
8		서울제일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C&M 주님의교회)		교회
9		서울제일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나성 세인교회)		
10		서울강서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예장 장원석 목사)	교역자	
11		서울강서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예장합동 윤복신 목사)		교역자
12		서울강서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예수교복음 고임종 목사)		
13		서울강서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필리핀성결 김수관 목사)	교회	
14		유럽직할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로마한인교회)		교회
15		전주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가독고신학대학원협의회 큰영광교회)		
16	인천남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예장 맹진재 목사)	교역자		
17	경기중앙지방법회	타교파 목사 청빙(독립교회연합 김진상 목사)		교회	
18	경서지방법회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서대문교회)			교회
1	사무부 (14건)	경인지방법회	유지재단에서 전국 지교회에 매년 가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일괄 발송		
2		경인지방법회	농촌목회연수원 설립		
3		부산서지방법회	총회사무국의 문서 제규정 강화		
4		부산서지방법회	기성교회주소록 앱을 장로도 회원 가입과 로그인 가능하도록 조치		
5		강원서지방법회	교단 주소록 PDF 발행		
6		서울강서지방법회	10월 첫주일을 군선교주일로 제정		
7		충서중앙지방법회	군선교주일 제정		
8		총회임원회	사동교회 고 김기봉 집사 순교자 확정		
9		총회임원회	성결회관 외플대학 임대 승인		
10		총회임원회	성결회 총회 지원 중단		
11		총회임원회	총회본부활동대책(T팀)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한 총회본부 매각과 이전에 대한 업무 위임대리권 부여		
12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주일 날짜 변경		
13		총회임원회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회원교단 참여		
14		경남지방법회	창원중앙지방법회 명칭 변경		
1	특별법 및	경기동지방법회	징계법 23조(5항 제목에서 재심 삭제)	특별법 및	
2		인천동지방법회	총회본부 처우규정 17조1항(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NO	의회부서	청 원 기 관	건의안청원 및 수개정 내용	구분
3	법제부 총 97건	인천동지방법회	총회본부 처우규정 15조3항(보호 삭제)	제규정
4		인천동지방법회	총회본부 처우규정 18조 홍보실 신설	
5		인천동지방법회	이단사이비대척특별법 2조(평신도를 성도로)	
6		서울남지방법회	총회본부 처우규정 17조1항(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7		이단사이비대척위원회	이단사이비대척특별법 3장9조8항, 3장 12조(재판비용 공탁)	
8		인천동지방법회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 평신도국에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9		전남서지방법회	총회본부 처우규정 13조 (총회비 산출시 15~19세 세례교인과 70세 이상 세례교인은 제외)	
10		전북중앙지방법회	총회본부 업무위임규정 평신도국에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1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운영규정5조5항(총회, 7조3항, 7조7항)호, 7조7항다호·전자투표 추가, 불법선거운동시 처리	
12		전북중앙지방법회	총회본부 처우규정17조1항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13		활천사	활천사 장관 15조-경년, 주간 63세로, 기타 직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로	
14		총회임원회	해선유영규정(당연직 임원)	
15		교역자공제회	공제회운영규정 28조, 31조, 37조	
16		총회교육위원회	총회교육위원회운영규정 제3조4항, 제4조1항·나호	
17		서울북지방법회	헌법67조1항-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파송	
18		특별법 및 제규정 16건	인천동지방법회	
19	인천동지방법회		헌법80조7항-홍보실 신설	
20	인천동지방법회		헌법80조6항호-평신도를 성도로	
21	인천동지방법회		헌법80조6항-평신도-평신도국을 성도국으로	
22	인천동지방법회		헌법61조2항(호)호-평신도를 성도로	
23	서울강남지방법회		헌법76조13~14항 권사회전국연합회를 총회협의기관에서 총회소속기관으로	
24	서울강남지방법회		헌법75조2항-평신도부에 전국권사회 추가	
25	서울강남지방법회		헌법80조6항·나호-평신도국 직무에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26	전주지방법회		헌법76조13~14항 권사회전국연합회를 총회협의기관에서 총회소속기관으로	
27	전주지방법회		헌법75조2항다호-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28	전주지방법회		헌법63조17~18항 지방권사회를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29	전주지방법회		헌법80조6항·나호-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30	전주지방법회		헌법61조2항(호)호-권사회지방연합회 추가	
31	경기동지방법회		헌법31조2항(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삭제	
32	경기동지방법회		헌법33조2항-직분자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명시	
33	경기동지방법회		헌법35조4항-미조직교회를 당회가 없는 교회로	
34	경기동지방법회	헌법39조2항-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35	경기동지방법회	헌법39조2항-미조직교회 처리목사를 당회가 없는 교회 담임교역자로		
36	경기동지방법회	헌법40조3항-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37	경기동지방법회	헌법43조2항-특수전도기관 보고 의무와 시행세칙 추가		
38	경기동지방법회	헌법43조6항-은퇴시 퇴직금 정산 및 예우 내용 삽입		
39	경기동지방법회	헌법46조2항-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40	경기동지방법회	헌법48조2항 삭제		
41	경기동지방법회	헌법50조3항-각호 순서 조정		
42	경기동지방법회	헌법59조4항(나호-지방회장 자격, 목사는 목사안수 15년 이상 담임목사 7년 이상 삽입)		
43	경기동지방법회	헌법59조4항(나호-지방회) 기타 임원 목사는 안수 13년 이상 지교회 담임 목사 5년 이상 삽입		
44	경기동지방법회	헌법61조2항(호)호-지교회의 지방회 이전을 전도부 업무에 추가		
45	경기동지방법회	헌법63조17항-지방회 회무에 포상 신설		
46	경기동지방법회	헌법75조1항-공천부 업무에서 교육, 선교위원회를 분리		
47	경기동지방법회	헌법75조1항-할증부서를 상설부서로		
48	경기동지방법회	헌법75조1항(호)호-고시위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49	경기동지방법회	헌법75조2항(호)호-공천부 업무에서 의회부서 삭제		
50	경기동지방법회	헌법75조2항(호)호-목사 장로 비례로 선출 삭제		

NO	의회부서	청원기관	건의안청원 및 수정내용	구분
51		경기동지방회	헌법76조1항 총회 회무에서 부원 삭제, 각급기관 추가 및 인준	
52		경기동지방회	헌법76조1항 단서조항 1,2 삭제	
53		경기동지방회	헌법76조1항다호(신설) 총회 회무에 포상 추가	
54		경기동지방회	헌법76조7항 총회 회무에 소환 추가, 연방기관으로 산하기관과 각 기관 통칭	
55		경기동지방회	헌법76조13항(신설)-탄핵	
56		경기동지방회	헌법78조9항-미조직교회를 당회가 없는 교회로	
57		충남지방회	헌법76조13-14항 권사회연맹회를 총회협의기관에서 총회소속기관으로	
58		충남지방회	헌법61조2항야호 권사회지방연맹회 추가	
59		충남지방회	헌법63조17-18항 권사회연맹회를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60		충남지방회	헌법75조2항다호1목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61		충남지방회	헌법80조36항나호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62		인천동지방회	헌법63조17-18항, 75조2항다호1목, 76조13-14항, 80조36항나호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위치 변경	
63		경북서지방회	헌법63조9항-장로대의원 자격을 안수 7년 이상으로	
64		청주지방회	헌법28조7항-동성에 찬성이나 동조 금지 신설	
65		전북중앙지방회	헌법61조2항야호 권사회지방연맹회 추가	
66		전북중앙지방회	헌법63조17-18항-지방권사회연맹회를 소속기관으로	
67		전북중앙지방회	헌법75조2항다호1목 전국권사회 추가	
68		전북중앙지방회	헌법76조13-14항 권사회전국연합회를 소속기관으로	
69		전북중앙지방회	헌법80조36항나호 권사회전국연합회 추가	
70		경인지방회	헌법67조1항-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71		경인지방회	헌법43조36항-사무장년은 71세되기 전날까지로	
72		경인지방회	헌법90조1항나호-총무는 공천부에서 선임 후 총회에서 재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73		광주동지방회	헌법67조1항 총회대의원에 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 당연직으로 파송	
74		경인지방회	헌법54조2항다호 사서-지방회장, 장로부회장 역임후 원로 되지 못한 경우도 지방회 발안권 회원으로	
75		경인지방회	헌법41조36항-경년을 71세 되기 전날까지로	
76		전남동지방회	헌법76조13, 14항-전국권사회를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77		경북지방회	헌법63조9항-사무장로의 총회대의원 자격을 안수 7년 이상으로	
78		인천중앙지방회	헌법28조-동성에 및 성적지향 찬성이나 동조 금지	
79		충서중앙지방회	헌법61조2항야호-심리부가 지교회 정관을 심의	
80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8조35항(교역자의 청빙) 목사를 교역자로, 남녀전도사를 전담, 교육 음악전도사로 구분	
81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7조-원로 명예목사 추대절차 및 예우 정리	
82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9조-미조직교회를 당회가 없는 교회로	
83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10조2항-미조직교회를 당회가 없는 교회로	
84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14조-단서조항 위치 조정	
85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18조-1,2항 삭제	
86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18조-계목 수정	
87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19조 신설-지방회 이전에 대한 업무	
88		경기동지방회	시행세칙20조 신설-탄핵결차	
89		서울남지방회	시행세칙13조1항 권사회 추가	
90		인천동지방회	시행세칙13조1항 권사회 추가	
91		충서중앙지방회	시행세칙76조7항나호-총서 3본의2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	
92		충서중앙지방회	시행세칙2조-내규를 정관으로 명칭 변경, 2,3항 신설	
93		전남서지방회	헌법67조1항다호(신설) 파송시 지교회수 30교회가 넘을 때마다 각각 1인 추가	
94		인천중앙지방회	헌법51조항 35조항 37조, 63조항 차관목사 역할, 중흥원 지역, 교인 지역	
95		인천중앙지방회	시행세칙16조 신설-치리목사 파송과 관한	
96		전북중앙지방회	시행세칙13조1항 권사회 추가	
97		전남서지방회	헌법67조1항 대의원 파송시 지방회장/장로부회장 당연직 파송	

〈별지3〉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제119년차 총회)

현	행	개정안	상정 지방회 및 개정사유	결과	
기	제23조(상소)	제5장 상소 및 재심(부분 삭제)	제5장 상소 및 재심(부분 삭제) 관점에 불만이 있을 때는 관료만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경기동지방회〉 제5장에는 23조 상소만 있고 재심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재심"은 제목에서 빼야 한다. 실제로 재심에 대한 유관해석 의의가 두 차례 있다.	부결
총	제15조(사무국)	제15조(사무국) 사무국장은 헌법 제80조 제4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3. 기획장부팀 바. 교단 홍보에 관한 사항	제15조(사무국) 사무국장은 헌법 제80조 제4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3. 기획장부팀 바. (삭제)	〈인천동지방회〉 가. 지금은 노박전도나 방로 전도보다는 여러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를 함으로서 대의 지명도를 높이고 교단 위상을 제고하여 간접 전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 어느 국가나 기업이나 막론하고 지명도를 올리고 선한 영향력을 높이려면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 Invs는 대외적으로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하나님의 교회) 교단에 비하여 대외 지명도가 매우 낮은 실정기에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 이단(구원바, 박우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들이나 유사 종교(통일교 등)에서는 종합 일간지나 방송에 광고를 함으로서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나, 우리 교단에서는 대외 홍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공중파 방송 종합 일간지 등 언론계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 대외 지명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라.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홍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 홍보실장은 여건이 될 때까지 평신도국장이 겸임한다면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 17조에 나오는 평신도 사역팀(남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소관협의기관인 장로회 권사회)와 사회복지팀(간접재단구호단 등)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사화하여 홍보하면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국에서 하던 교단 홍보에 관한 사항을 홍보실을 신설하여 우리 교단의 여러 좋은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외 지명도를 높여 간접적인 전도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건의합니다.	부결
총	제17조(평신도국)	제17조(평신도국) 평신도국장은 헌법 제80조 6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2. 평신도사역팀 가.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다. 권사회전국연합회 사항 라. 평신도지도자수련에 관한 사항 마. 소관협의기관(장로회, 권사회)에 관한 사항 바. 소관부서 회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의회부서 : 평신도부 사.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평신도국) 평신도국장은 헌법 제80조 6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2. 평신도사역팀 가.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다. 권사회전국연합회 사항 라. 평신도지도자수련에 관한 사항 마. 소관협의기관(장로회, 권사회)에 관한 사항 바. 소관부서 회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의회부서 : 평신도부 사.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천동지방회〉 전국권사회는 그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해 몸담았으며 많은 헌신을 해온 기관입니다. 특히 총회 주요 사업을 돕고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해주었으나 총회 협의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여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전국권사회 임원들의 열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구와 노련화로 인해 교회 안의 수요 봉사기관이 권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전국권사회를 총회의 지방회의 소속기관으로 격상하여 교회와 교단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결
총	제17조(평신도국)	제17조(평신도국) 평신도국장은 헌법 제80조 6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3. 평신도사역팀 가.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다. 권사회전국연합회 사항 라. 평신도지도자수련에 관한 사항 마. 소관협의기관(장로회, 권사회)에 관한 사항 바. 소관부서 회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의회부서 : 평신도부 사.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평신도국) 평신도국장은 헌법 제80조 6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4. 평신도사역팀 가.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사항 다. 권사회전국연합회 사항 라. 평신도지도자수련에 관한 사항 마. 소관협의기관(장로회, 권사회)에 관한 사항 바. 소관부서 회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의회부서 : 평신도부 사.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남지방회〉 전국권사회는 그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해 몸담았으며 많은 헌신을 해온 기관입니다. 특히 총회 주요 사업을 돕고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해주었으나 총회 협의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여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전국권사회 임원들의 열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구와 노련화로 인해 교회 안의 수요 봉사기관이 권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전국권사회를 총회의 지방회의 소속기관으로 격상하여 교회와 교단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결

현	행	개 정 안	상 정 지 방 회 및 개정 사유	결 과
총회본부	사무규정 제17조 1항 제17조(평신도국)	제17조(평신도국) 평신도국장은 헌법 제80조 6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2. 평신도사역팀 가. 남전도화전국연합회 사항 나. 여전도화전국연합회 사항 다. 평신도지도자수련에 관한 사항 라. 소관협의기관(성로회, 권사회)에 관한 사항 마. 소관부서 회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의회부서 : 평신도부 바. 소관문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북중앙지방회> 전국권사회는 그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헌신을 해온 기관입니다. 특히 총회 주요 사업을 돕고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하였으나 총회 협의의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여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전국권사회 임원들의 열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규와 노령화로 인해 교회 안의 수요 봉사기관이 권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전국권사회를 총회의 지방회의 소속기관으로 격상하여 교회와 교단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결
총회본부	사무규정 제18조(신실)	제18조(홍보실) 홍보실장은 헌법 80조 7항의 직무를 담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단, 홍보실장은 평신도국장이 겸임한다. 1. 홍보팀 가. 공중파 방송, 종합 일간지 등 언론계와 유기적 관계로 교단 홍보에 관한 사항 나. 교단 홈페이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홍보 매체들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항 다. 소관 문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천동지방회> 가. 지금은 노방전도나 방문 전도보다는 여러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함으로서 대외 지명도를 높이고, 교단 위상을 제고하여 간접 전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 어느 국가나 기업이나 막론하고 지명도를 올리기 위한 영향력을 높여야만 홍보를 강화하는데 우리 levels은 대외적으로 경료교단, 감리교단, 순복음(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비하여 대외 지명도가 매우 낮은 실정하기에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 이단(구원파, 박우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들이나 유사 종교(통일교 등)에서는 종합 일간지나 방송에 광고를 함으로서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나, 우리 교단에서는 대외 홍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공중파 방송, 종합 일간지 등 언론계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 대외 지명도를 높여야 합니다. 라.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홍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성교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마. 홍보실장은 여간이 될 때까지 평신도국장이 겸임한다던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총회본부 사무규정 제 17조에 나오는 평신도 사역팀(남·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소관협의기관인 성로회, 권사회)과 사회봉사팀(기독교나구단 등)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사화하여 홍보하면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국에서 하던 교단 홍보에 관한 사항을 홍보실을 신설하여, 우리 교단의 여러 좋은 콘텐트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외 지명도를 높여 간접적인 전도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건의합니다.	부결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목에 기재되어 있는 정상비 수입 결산액을 근거로 산출하며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정상비 수입 결산액 대비 세례교인수가 월등히 많아서 1인 결산액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며 1인 결산액의 50% 금액으로 한다. 단, 15세~19세까지의 세례교인과 70세 이상된 세례교인은 제외한다.)	<전남서지방회> 총회는 총회비를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에 따라 정상비 혹은 세례교인으로 산출합니다. 문제는 세례교인에는 해지교회 정회원(19세)만 포함된 것이 아닌, 유소년 세례교인 및 유아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자가 세례교인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유소년 세례교인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총회비 산출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둘째, 이들이 총회비 산출에 적용된다면 구판하기 때문에 해지교회에서 15세 이상의 세례 대상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악행을 자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70세 이상 된 세례교인에게도 총회비를 산출하는 일은 농어촌교회 평균연령 80대가 다수이고 병환으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제적시킬 수 없어 품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한성도 한 영호 주교로 인도하시는 정신에도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총회비 산출 방법에 원본은 유지하고 추가로 "단, 15세~19세까지 세례교인과 70세 이상 된 세례교인은 총회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추가 제안으로 청원합니다.	부결

현	행	개 정 안	상 정 지 방 회 및 개정 사유	결 과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 제2조 제2조(목적)	제2조(목적) 본 법은 헌법 제8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교인(교역자, 교직자, 성도)이 이단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단 사이비 관련자의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인천동지방회> 가. 헌법에는 "신도"라는 말이 없고, 대부분 "교인"으로 되어 있고 일부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 성경에는 대부분 "성도"(약 87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신도"라는 말은 주로 불교(신도회)나 이단 교파(IMS신도)에서 사용하며,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신도"나 "신자"라는 말 대신에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라. 국어사전에 "신도"란 "어떤 일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며, "성도"란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 그러므로 총회본부 "평신도국", 총회 의회부서인 "평신도부", 지방회 의회부서인 "평신도부"를 "성도국", "성도부"로, "평신도"를 "성도"로 개정을 건의합니다.	부결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 3장 제9조 8항 제9조(기소)	제9조(기소) 8. 위원회의 결의가 기소가 된 경우 고소자에게 기입내 재판비용 공판문을 문서로 통보하며 재판정행은 재판비용을 공판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총회에서 본 위원회에 배정된 이단 소송 및 의뢰 사건변호와 사건결을 부여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에게 사건접수 되었을 때 고소자에게 기입내 재판비용 공판문을 문서로 통보하며 재판정행은 재판비용을 공판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부결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 3장 제12조 제12조(재판비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부된 사건의 재판비용은 판결에 의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며 비용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시는 가중 처벌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총회에서 본 위원회에 배정된 이단 소송 및 의뢰 사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 예산으로는 본 위원회에 고발된 사건을 처리 할 수 없기에 조사조사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원회에서 고발인에게 공판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결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 업무위임전결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평신도국 소관</th> <th>국장</th> <th>총무</th> <th>총회장</th> </tr> </thead> <tbody> <tr> <td>1. 평신도지도자수련회 계획 및 결과보고</td> <td></td> <td></td> <td>○</td> </tr> <tr> <td>2. 남전도화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td> <td></td> <td>○</td> <td></td> </tr> <tr> <td>3. 여전도화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td> <td></td> <td></td> <td>○</td> </tr> <tr> <td>4. 권사회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td> <td></td> <td>○</td> <td></td> </tr> <tr> <td>5. 향촌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td> <td></td> <td></td> <td>○</td> </tr> <tr> <td>6. 향촌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결과 보고</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신도국 소관	국장	총무	총회장	1. 평신도지도자수련회 계획 및 결과보고			○	2. 남전도화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3. 여전도화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4. 권사회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5. 향촌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	6. 향촌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결과 보고			○	<인천동지방회> 전국권사회는 그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헌신을 해온 기관입니다. 특히 총회 주요 사업을 돕고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하였으나 총회 협의의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여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전국권사회 임원들의 열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규와 노령화로 인해 교회 안의 수요 봉사기관이 권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전국권사회를 총회의 지방회의 소속기관으로 격상하여 교회와 교단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결
평신도국 소관	국장	총무	총회장																													
1. 평신도지도자수련회 계획 및 결과보고			○																													
2. 남전도화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3. 여전도화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4. 권사회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5. 향촌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																													
6. 향촌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결과 보고			○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 업무위임전결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평신도국 소관</th> <th>국장</th> <th>총무</th> <th>총회장</th> </tr> </thead> <tbody> <tr> <td>1. 평신도지도자수련회</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신도국 소관	국장	총무	총회장	1. 평신도지도자수련회			○	<전북중앙지방회> 전국권사회는 그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헌신을 해온 기관입니다. 특히 총회 주요 사업을 돕고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하였으나 총회 협의의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부결																				
평신도국 소관	국장	총무	총회장																													
1. 평신도지도자수련회			○																													

현	행	개 정 안	상정 지방회 및 개정사유	결과
1.평신도지도자수련회 계획 및 결과보고		○	배려를 하지 못하여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전국권사회 임원들의 열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교회 안의 수요 봉사기회가 권사회가 되지 오래입니다. 이에 전국권사회를 총회와 지방회의 소속기관으로 격상하여 교회와 교단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남전도회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3.여전도회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4.권사회전국연합회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5.향존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		
6.향존위원회 의회부서 회의 소집 결과 보고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임무			본과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위원장과 서기: 총회임원 및 총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와 기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심의분과(목사 1명, 장로 1명):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자격요무 일체를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별법 부정선거 예방 및 선거법 위반사건을 접수처리한다. 나. 관리분과(목사 1명, 장로 1명): 선거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 일체를 관리하여 선거진행을 관장한다. 지방회 선거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다. 홍보분과(목사 1명, 장로 1명): 선거에 대한 제반 홍보 및 후보자 공보사항을 관장한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임무 가. 총회임원 및 총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 나.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선거공보 송부 다. 지방회 선거관리업무 지도 감독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라. 불법 부정 선거 예방 및 선거법 위반사건 접수 처리 마.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			본과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위원장과 서기: 총회임원 및 총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와 기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심의분과(목사 1명, 장로 1명):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자격요무 일체를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별법 부정선거 예방 및 선거법 위반사건을 접수처리한다. 나. 관리분과(목사 1명, 장로 1명): 선거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 일체를 관리하여 선거진행을 관장한다. 지방회 선거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다. 홍보분과(목사 1명, 장로 1명): 선거에 대한 제반 홍보 및 후보자 공보사항을 관장한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권			가. 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고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며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또는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고발 사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며 추징금을 정하고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권 가. 위원회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며 추징금을 정하고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가. 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고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며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또는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고발 사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며 추징금을 정하고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입 후보자 등록			하. 향존직, 의회부서장(장로의 경우 서기), 교단 관련 별인 이사 및 감사의 사임 확인서 1부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입 후보자 등록			다. 등록은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등록도 가능한 참석이 원칙이어야 한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입 후보자 등록서류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경력을 입증하고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이력서에 담입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입 후보자 등록서류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 위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경력을 입증하고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이력서에 담입	가결

현	행	개 정 안	상정 지방회 및 개정사유	결과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목사, 시무장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이외의 경력은 기록하지 않는다. 지방회 경력 또한 지방회(장로는 부회장) 이외의 경력은 기록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입 후보자 등록서류 사 사. 소속 정기자방회 추천결의서 1부			이래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소속 정기자방회의 회의를 각각 복사하여 원문대조필하여 제출한다. 회원 점검 서기 000씨가 회원을 점검하니 목사대의원 000명 중 00명, 장로대의원 00명 중 00명이 출석하여 각각 과반 수 출석함을 보고 하다. 안안도의 총회 임원 추천 00교회 당회장 000씨가 추천한 000씨의 제 000 년 차 000 입후보 추천의 간은 000씨의 동의와 000씨의 재정으로 의안상정되어 의결이 가부를 물으니 개석인원 00명(목사 00명, 장로 00명) 중 찬성 00명 반대 0명 무효 00명으로 가결되어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다. 폐회 회무를 다하며 폐회하지는 000씨의 동의가 성립되어 의장 000씨가 폐회를 선언하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등 별비 총회임원 및 총무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결의한 소정의 등록금을 소수 해지회비가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선거관리 후 남은 금액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이체하며 입후보 선거관리 후 남은 금액은 입후보자에게 반환하며 방법은 위원회 결의로 한다.			총회임원 및 총무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결의한 소정의 등록금 소수 해지회비가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선거관리 후 남은 금액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이체하며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사비 및 탈락,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항 나 2) 입후보자는 전화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주일에는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는 전화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주일에는 할 수 없다.)	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항 마 호 선거(투표)			1) 총회 임원 및 총무의 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결
1) 총회 임원 및 총무의 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1) 총회 임원 및 총무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단, 종이투표, 전자투표 등 선거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불법부정 선거처리) 3항			3. 입후보자가 불법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규정 위반을 적발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단계별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 회의 권하여 의한 처벌이나 개파위원회에 제소하여 위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부결
3. 입후보자가 불법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규정 위반을 적발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단계별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 회의 권하여 의한 처벌이나 개파위원회에 제소하여 위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3. 입후보자가 불법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규정 위반을 적발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단계별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 회의 권하여 의한 처벌이나 개파위원회에 제소하여 위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부결

현	행	개 정 안	상정 지방회 및 개정사유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 가. 경고 가. 경고 다음 1), 2), 3)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한다.	가. 주의 다음 1), 2), 3)에 해당하는 자는 주의 조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7조 3항 변경에 따른 조치이다.	부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 다. 등록거부나 취소 다. 등록거부나 취소 다음 1), 2), 3)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한다.	다. 등록거부나 취소 다음 1), 2), 3)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조치를 하고, 경고조치 2회시 후 반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7조 3항 변경에 따른 조치이다.	부결
	활천사 정관 제15조 제15조(임기 및 정년) 1. 주강: 임기 5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 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2. 부강: 임기 5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 며 정년은 50세로 한다. 3. 사무원: 임기 5년으로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35세로 한다.	제15조(정년) 주강은 63세로 하고 기타 직원은 국가 가 정한 법률의 범위로 한다.	<활천사>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준함	가결
	총회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개 정) (산규)	총회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회원) 4항 4. 후원회원: 월 1만원 이상의 총회 교육사업을 위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 으로 후원하는 개인	<총회교육위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교육위원회는 교단의 미래를 교육과 목회를 통해 준비하자는 사명 아래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총회 교육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교육의 발전을 위 해 부위원장의 인원을 확충하여 역동적인 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운영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 았습니다. 이에 기존 2인의 부위원장에게 약간명으 로 수청하여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 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명시되었던 후원회원 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교사, 교역자, 성 도) 후원회원을 발굴하여 교육사업과 다음세대 교육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된 대로 운영규정 수정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
	총회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나 (수정) 나. 부위원장(2인)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목사, 장로 각 1인으 로 한다.	나. 부위원장(약간명)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교육위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교육위원회는 교단의 미래를 교육과 목회를 통해 준비하자는 사명 아래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총회 교육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교육의 발전을 위 해 부위원장의 인원을 확충하여 역동적인 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운영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 았습니다. 이에 기존 2인의 부위원장에게 약간명으 로 수청하여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 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명시되었던 후원회원 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교사, 교역자, 성 도) 후원회원을 발굴하여 교육사업과 다음세대 교육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된 대로 운영규정 수정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제28조 퇴직연금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 중, 70세 (65세)까지 교회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무한 자가 퇴직할 때에 평생 토록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8조 퇴직연금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 중, 70세(자원정년 65세)까지 교회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무한 자 가 퇴직할 때에 평생토록 매월 퇴직연 금을 지급한다.	<교역자공제회> 자원정년 문구를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함	가결
	제31조 퇴직일시금 1.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 게 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월평균 불입액 × 7.0 × 가입연수로 한다.	제31조 퇴직일시금 1.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 게 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frac{\text{납입총액} + \text{납입총액} \times \text{한국은행기준금리} \times (\text{호봉} - 1) \times 0.3}{\text{호봉}}$	<교역자공제회> 퇴직일시금 계산식 오류수정	가결
	제37조 사망일시금 및 특별유족연금 1. 특별유족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배우자 에게 지급한다.	제37조 사망일시금 및 특별유족연금 1. 특별유족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교역자공제회> 사망일시금 계산식 오류수정	가결

현	행	개 정 안	상정 지방회 및 개정사유	결과
	2. 사망일시금은 배우자를 제외한 유족이 신청하여 지급하며 산정방법은 $\text{총납입액} \times \text{가입기간} \times \text{한국은행기준금리} \times (\text{호봉} - 1) \times 0.3$ 로 한다. 3. 특별유족연금은 평균월불입액의 100분 의 125 + 18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4. 특별유족연금은 10년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단, 유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는 연장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일시금은 배우자를 제외한 유 족이 신청하여 지급하며 산정방법은 $\frac{\text{납입총액} + \text{납입총액} \times \text{한국은행기준금리} \times (\text{호봉} - 1) \times 0.3}{\text{호봉}}$ 3. 특별유족연금은 평균월불입액의 100분의 125 + 180,000원을 매월 지 급한다. 4. 특별유족연금은 10년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단, 유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는 연장 지급할 수 있다.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1항 가 호 제11조(임원회) 1. 본 위원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당연직 임원(2): 직전위원장, 직전 장로부위원장, 교단총무는 당연직 임 원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회) 2. 본 위원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 음과 같다. 가. 당연직 임원(2): 직전위원장, 직전 장로부위원장, 교단총무는 당연직 임 원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총회임원회>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교단총무를 추가하여 해외선교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총회본부의 원활한 협조로 체계적인 운영을 영위하 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